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19일, 신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7.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
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정훈 의원)

현행법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는 위탁 여부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도 유사한 상호금융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24조 및 제35조 등)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의무위탁 대상 규정
(안 제3조)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1960년대 서민·농민의 생활고

와 고금리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 조직으로 출발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조합과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구분됨.

2025년 2월 기준으로 865개의 조합과 약 665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153조원임.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선거 관리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의위탁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지역조합 이사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변경하였음.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를 구분하여 의무위탁 대상 공공단체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로 하고 있고,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한해 동법상 선거운동 및 벌칙규정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로 변경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특히,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에서 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일을 임기 시작일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또는 2029년 11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의무위탁은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동시선거일에는 의무위탁에 해당하는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조합이 없으나, 중앙회장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12월 전까지는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2025.12.)까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의무위탁선거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각종 선거운동 규제(제7장 선거운동)와 벌칙(제10장 벌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선거사무관리, 선거운동규제 및 벌칙 등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봄.

다만,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에서 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동시이사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사장선거’의 정의에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 제13조(선거기간) 및 제14조(선거일)는 의무위탁 대상기관 이사장의 선거기간과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이사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선거기간에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고,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동시이사장 선거일을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신용협동조합이사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의 적용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추가(안 제24조)

현행법은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한하여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

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4조는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출방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중앙회장은 각 조합의 이사장들이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운동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한 현행법 제24조제3항제1호에도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제24조제3항제1호에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사장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제한 등
(안 제35조 및 제36조)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에서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현행법에서도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 등이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기부행위 제한 등의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금품 제공 등을 통한 유권자 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범수)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